[공모펀드 변경 안내]

가. 대상 펀드: 교보악사 파워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 2호(주식)

(변경전: 교보악사파워러시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))

나. 변경 시행일 : 2018년 7월 12일

다. 변경 내용 :

- 투자신탁 명칭 변경

-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추가

- 투자대상 변경 및 대상 변경에 따른 투자전략 및 비교지수 변경

- 투자신탁의 전환 구조 삭제

- 환매대금 지급일 변경

- 투자위험등급 분류 기준 및 등급 변경(실제 수익률 변동성 ->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)

[집합투자규약]

| 구분 | 정정전 | 정정후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투자신탁 명칭 | 교보악사 파워러시아 증권전환형자투 | 교보악사 파워브릭스 증권자투자신탁 |
| | 자신탁 1호(주식) | 2호(주식) |
| |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|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|
| | 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각호에 | 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각호에 |
| | 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| 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|
| |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 |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 |
| | 한다. | 한다. |
| | 1.~9. 생략 | 1.~9. 현행과 같음 |
| #10.T.(0.01.01.H.01) | 10. "전환형"이라 함은 복수의 집합투 | 10. 삭 제 |
| 제2조(용어의 정의) | 자기구 간에 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| |
| | 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| |
| |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 | |
| | 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| |
| | 부여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 | |
| | 다. | |
| | 11. 생략 | 11. 현행과 같음 |
| | 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, | 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, |
| | 투자신탁의 명칭은 '교보악사 파워러시 | 투자신탁의 명칭은 ' 교보악사 파워브릭 |
| 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| 아 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호(주식)'이 | <u>스 증권자투자신탁 2호(주식)</u> '이라 한 |
| 종류 및 명칭 등) | 라 한다. | 다. |
| |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형태를 |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형태를 |
| |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. |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. |



1.~ 6. 생략 1.~ 6. 현행과 같음 7. 전환형 7. 삭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생략 1. 생략 신설 2. 교보악사 파워브릭스 증권모투자신 탁(주식) ⑤이 투자신탁은 전환형투자신탁으로 ⑤ 삭제 서,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 (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을 통칭하여 이하에서 "교보악사 파워 전환형 투자 신탁"이라 한다.) 내에서 하나의 수익 증권을 환매하는 동시에 다른 투자신 탁의 수익증권을 매수(이하 "투자신탁 의 전환"이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 다 만, 판매회사는 수익자가 전환 신청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클래스와 동일한 수익증권 클래스로 전환 처리하여야 하며, 다른 수익증권 클래스로 전환처 리 할 수 없다. 제 3 조의 3(투자신탁의 내용 생략 삭제 전환) 제 16 조(투자목적) ①투자신탁은 러시아의 기업 및 이러 이 투자신탁은 브라질, 러시아, 인도, 한 국가들과 연관된 사업을 영위하는 중국(홍콩, 대만, 싱가포르를 포함한다. 기업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 이하 같다.)(이하 "브릭스"라 한다)의 신탁을 시행령 제 94 조 제 2 항 제 4 호 기업 및 이러한 국가들과 연관된 사업 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에 주로 투자 **하는 모투자신탁을** 시행령 제 94 조 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, 수익자는 러시아 주식에 직접 투 2 항 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 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수 있으며, 러시아 주식은 다양한 변수 것을 목적으로 하며, **수익자는 브릭스** 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, 브릭스 주식 가지고 있다. 또한, 이 투자신탁은 외 국 통화 환율 변동에 노출되어 있다. 은 다양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 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. 또한, 이 투자신탁은 외국 통화 환율 변동에 노 출되어 있다.

1. 교보악사 파워러시아 증권 모투자 제 18 조(투자대상자산 취 1. **제3조제4항제1호 내지 제2호**에의 신탁 1호(주식)에의 투자는 집합투자기 투자는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득하도) 구 집합투자재산의 100% 이하로 한다. 100% 이하로 한다. 2. 제17조제2항 각호의 방법으로의 운 2. 제17조제2항 각호의 방법으로의 운 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 이하 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 이하 로 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 로 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 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 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 는 경우 또는 제26조 및 제27조의 규 는 경우 또는 제26조 및 제27조의 규 정에 의한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 정에 의한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 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하는 과정 및 제3조제4항 각호의 모투 지급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단기대출 자신탁 교체(리밸리싱) 과정에서 모투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의 비율이 일시 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로 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인하여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치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 수 있다. <개정 2018.07.12> 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제 27 조(환매가격 및 환 ②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②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매방법)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 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 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 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 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 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9영업일 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8영업일 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10영업 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9영업 일)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 일)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 다. 다. ③~④ 생 략 ③~④ 현행과 같음 ①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투자신탁 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"보 ②투자신탁 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"보 수계산기간"이라 한다)은 최초설정일로 수계산기간"이라 한다)은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 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 간 중 투자신탁 보수를 매일 대차대조 간 중 투자신탁 보수를 매일 대차대조 제 39 조(보수) 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경 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경 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 에서 인출한다. 에서 인출한다. 1.~3. 생략 1.~3. 생략 4. 제3조의2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4. 삭제

| 전환 | |
|------|----------|
| ③ 생략 | ③ 현행과 같음 |

[투자설명서]

| 구분 | 정정전 | | 정정후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
| 제1부.모집 또는 매 | 332 | | 331 | | |
| 출에 관한 사항 | | | | | |
| 제2부. 집합투자기 | 교보악사 파워러시아 증권전환형자투자 | | 교보악사 파워! | 브릭스 증권자투 | 자신탁 2호 |
| 구에 관한 사항 | 신탁 1호(주 | | (주식) | | . — . |
| 1. 집합투자기구의 | | | | (, ,, | |
| 명칭 | | | | | |
| 제1부.모집 또는 매 | 마. 특수형태 표시 : 전환형 (복수의 투자 | | 마. 특수형태 표시 : 삭제 | | |
| 출에 관한 사항 | 신탁 간에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소유 | | | | |
| 2. 집합투자기구의 | 하고 있는 투자신탁을 | 하고 있는 투자신탁을 다른 투자신탁으 | | | |
| 종류 및 형태 | 로 전환할 수 있는 권 | 리를 수익자에게 | | | |
| | 부여하는 구조의 투자신 | 탁) | | | |
| 제2부. 집합투자기 | - | | 연혁 업데이트 | | |
| 구에 관한 사항 | | | | | |
| 2. 집합투자기구의 | | | | | |
| 연혁 | | | | | |
| 제2부. 집합투자기 | 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| | 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| | |
| 구에 관한 사항 | 증권(주식형), 투자신탁, 개방형, 추가형, | | 증권(주식형), 투자신탁, 개방형, 추가형, | | |
| 6. 집합투자기구의 | 종류형, 모자형, 전환형 | | 종류형, 모자형 | | |
| 구조 | 다. 모자형 집합투자기구 | 의 구조 | 다.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| | |
| | | 교보악사 파워 | | 교보악사 | 교보악사 |
| | 투자신탁 | 러시아증권모 | 투자신틱 | t 파워러시아 | 파워브릭 |
| | 자투자신탁 | 투자신탁 1호 | | 증권모투자 | 스 증권 |
| | ATALA | (주식) | | 신탁 1호 | 모투자신 |
| | 교보악사 파워러시아 | | 자투자신탁 | (주식) | 탁(주식) |
| | 증권전환형자투자신 | 100% 이하 | 교보악사 파워 | 4 | |
| | 탁 1호(주식) | | 브릭스증권자 | 1000/ | 이성 |
| | | | 투자신탁 2호 | 100% | YI |
| | | | (주식) | | |
| | 라. 전환형 집합투자기구 | | 라. 삭제 | <u> </u> | |
| 제2부. 집합투자기 | 이 투자신탁은 러시아주식에 주로 투자 | | 이 투자신탁은 <u>브라질, 러시아, 인도, 중국</u> | | |
| 구에 관한 사항 | 하는 모투자신탁을 시행령 제94조제2항 | | (홍콩, 대만, 싱가포르를 포함) (이하 "브 | | |
| 7. 집합투자기구의 |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투자대상자산으 | | <u>릭스"라 함)</u>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 | | |



| 투자목적 | 로 하여 비교지수인 'MSCI Russia Index (KRW기준)'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 다만 투자목적을 위해 해당지수에 편입된 종목별 투자비중 및 종목 수를 탄력적으로 조절 할 수 있습니다. | 신탁을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<u>비교</u> 지수인 'MSCI BRIC Index (KRW기준)'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 다만 투자목적을 위해 해당지수에 편입된 종목별 투자비중 및 종목 수를 탄력적으로 조절 할 수 있습니다. | |
|---|---|--|--|
| 제2부. 집합투자기 구에 관한 사항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 | 교보악사 파워러시아 증권모 100% 투자신탁 1호 (주식) 이하 | 교보악사 파워러시아 증권모 투자신탁 1호 (주식) 100% 교보악사 파워 브릭스 증권 이하 모투자신탁(주식) - 교보악사 파워 브릭스 증권모투자신탁 (주식)의 투자대상 추가 | |
| 제2부. 집합투자기 구에 관한 사항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. 투자제한 | - | - 교보악사 파워 브릭스 증권모투자신탁 (주식)의 투자제한 추가 | |
| 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|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(1) 기본 운용전략 : 이 투자신탁은 러시아 주식시장에 상장 된 주식 및 해당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|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(1) 기본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<u>브라질, 러시아, 인도, 중국</u> (홍콩, 대만, 싱가포르를 포함)에 상장된 | |
| | 하는 DR 또는 ETF 에 주로 투자하여 비교지수인 'MSCI Russia Index (KRW 기준)' 수익률을 추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자집합 투자기구로서 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 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. | 주식 및 해당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DR 또는 ETF 에 주로 투자하여 비교지수 인 'MSCI BRIC Index (KRW기준)' 수익률을 추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자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. | |
| | 1)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 신탁의 기본 운용전략 ①종목선정 및 마켓타이밍을 배제한 채 러시아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 하여 일관성 있는 성과를 시현합니다. - 이하 내용 생략 — | | |
| | (3)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의 운용실적 비교를 위해 비 교지수를 [MSCI Russia Index (KRW) * | - 이하 내용 생략 - (3)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의 운용실적 비교를 위해 비교지수를 [MSCI BRIC Index (KRW기준) | |

90%] + [Call 10%]로 정했습니다. * 90%] + [Call * 10%]로 정했습니다. - 비교지수 및 국가별 현황 변경 (4) 위험관리 (4) 위험관리 브라질, 러시아, 인도, 중국(홍콩, 대만, 싱가포르를 포함) 투자에 대한 내용을 업데이트 제2부. 집합투자기 브라질, 러시아, 인도, 중국(홍콩, 대만, 싱 가포르를 포함) 투자에 대한 내용을 업데 구에 관한 사항 이트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제2부. 집합투자기 투자위험 등급 (2) 등급 높은 위험 **투자위험 등급 (1) 등급 매우 높은** 구에 관한 사항 수준 위험 수준 10. 집합투자기구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투자위험 탁은 특정국가(러시아)의 주식 및 ETF 등 은 특정 국가[브라질, 러시아, 인도, 중국(라. 이 집합투자기 에 주로 투자하여 환율 변동위험에 노출 홍콩, 대만, 싱가포르 포함)]의 주식 및 ET 구에 적합한 투자자 되어 있는 증권(주식형) 집합투자기구로 F등에 주로 투자하여 환율 변동위험에 노 유형 서 매우 높은 시장 변동을 감수하더라도 |출되어 있는 증권(주식형) 집합투자기구로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국가의 주식 등에 서 매우 높은 시장 변동을 감수하더라도 집중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고, 투자 원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국가의 주식 등에 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집중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고, 글로벌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. 이러한 높 시장의 경제여건 변화와 증권의 가격변동 은 투자위험을 고려할 때 투자자의 전체 에 대한 상관관계, 증권의 투자위험, 투자 포트폴리오 중 이러한 유형의 투자신탁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에 대한 투자는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되 이해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. 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교보악사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㈜는 투자대상 자산의 ㈜는 실제 수익률의 변동성(최근 결산일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 기준표준편차 23.11%)을 감안하여 이 투 탁의 위험등급을 1 등급(매우 높은 위험) 자신탁의 위험등급을 2 등급(높은 위험)으 으로 분류하였습니다. 이 투자신탁은 설정 로 분류하였습니다. 이 투자신탁이 실제 일로부터 3 년이 지나 실제 수익률의 변동 수익률의 변동성(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성을 기준으로 투자위험등급을 분류하여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)에 기초 야 하나,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 하여 위험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매 결 신탁이 변경되어 과거 실제 수익률 변동 산시점마다 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 성이 변경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률 변동 니다. 수익률의 변동성은 투자기간 동안 성과 동일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투자대 투자신탁의 평균수익률 대비 수익률이 상 자산의 종류에 따라 위험등급을 분류 변동한 범위를 측정하는 통계량으로써 하였습니다. 투자신탁의 위험도를 측정하는 지표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(교보 하나입니다. 높은 변동성은 높은 위험도 **악사 파워 브릭스 증권모투자신탁(주식))**

| | 를 의미합니다. | 이 설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는 경우 실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제 수익률의 변동성(최근 결산일 기준 과 |
| | | 거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)에 기 |
| | | 초하여 위험등급이 결정할 예정이며, 이 |
| | | 경우 매 결산시점마다 위험등급이 변경될 |
| | | 수 있습니다. 이 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 |
| | | 인 교보악사자산운용㈜가 정하는 기준에 |
| | | 따른 것으로 판매회사가 제시하는 위험등 |
| | | 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이 투 |
| | | 자신탁에 가입하시기 전에 판매회사의 위 |
| | | 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|
| 11. 매입, 환매, 전 | (2)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| (2)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|
| 환절차 및 기준가격 | ①오후5시(17시)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 | ①오후5시(17시)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 |
| 적용기준 | 우 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 | 우 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 |
| 나. 환매 | (D+3)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 | (D+3)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|
| | 여 제9영업일(D+8)에 환매금액 지급 | <u>제8영업일(D+7)</u> 에 환매금액 지급 |
| | ②오후5시(17시)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| ②오후5시(17시)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|
| | 경우 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 | 경우 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 |
| | 일(D+4)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| (D+4)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|
| | 하여 제10영업일(D+9)에 환매금액 지급 | <u>제9영업일(D+8)</u> 에 환매금액 지급 |
| | (6)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| (6)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|
| |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 |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 |
| | 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 | 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 |
| | 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| 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 |
| |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| 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 |
| |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| 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 |
| | 날의 제7영업일전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 | 의 <u>제6영업일전일(</u> 17시 경과 후에 환매 |
| |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8영업일전일)과 그 | 청구하는 경우에는 <u>제7영업일전일)</u> 과 그 |
| |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 |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 |
| | 구를 한 경우 | 를 한 경우 |
| 제2부. 집합투자기 | 다. 전환 | 다. 전환 |
| 구에 관한 사항 | 이 투자신탁의 전환 청구를 한 때에는 | 삭제 |
| 11. 매입, 환매, 전 | 아래에 따라 처리합니다. | |
| 환절차 및 기준가격 | - 아래 내용 생략 - | |
| 적용기준 | | |

[간이투자설명서]

| 구분 | 정정전 | 정정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주식투자전용 | |
| | 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가입할 수 | |
| I. 집합투자기구의 개 | 있습니다. 이 경우 이 집합투자기구 | |
| 요 | 가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·평 | 삭제 |
| 투자자 유의사항 | 가 손익(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 | |
| | 함합니다)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 | |
| | 에서 제외됩니다. | |
| | •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 이상을 |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 이상을 브 |
| | 러시아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 | 라질, 러시아, 인도, 중국(홍콩, 대만, |
| I. 집합투자기구의 개 | 신탁에 투자 | 싱가포르를 포함) 관련 주식에 투자하 |
| 요 | •법 제232조에 의거한 전환형 집합 | 는 모투자신탁에 투자 |
| 집합투자기구 | 투자기구 : [교보악사 파워 전환형 투 | |
| 특징 | 자신탁] 교보악사 파워 브라질/러시 | |
| | 아/인디아/차이나/브릭스 증권 전환형 | |
| | 자투자신탁 1호(주식) | |
| I. 집합투자기구의 개 | 투자신탁. 증권(주식형), 개방형, 추가 | 투자신탁, 증권(주식형), 개방형, 추가 |
| 요 | 형, 종류형, 모자형, 전환형 | 형, 종류형, 모자형 |
| 분류 | | |
| I. 집합투자기구의 개 | •17시 이전 : 4영업일 기준가 9영업 일 대금 지급 | •17시 이전 : 4영업일 기준가 8영업 일 대금 지급 |
| 요 | •17시 경과후 : 5영업일 기준가 10영 | •17시 경과후 : 5영업일 기준가 9영업 |
| 환매 방법 | 업일 대금 지급 | 일 대금 지급 |
| | 1. 투자목적 | 1. 투자목적 |
| | 이 투자신탁은 러시아주식에 주로 투 | 이 투자신탁은 <u>브라질, 러시아, 인도,</u> |
| | 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시행령 제94조 | 중국(홍콩, 대만, 싱가포르를 포함) (이 |
| | 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투자대 | <u>하 "브릭스"라 함)</u> 주식에 주로 투자 |
| │ │Ⅱ. 집합투자기구의 투 | 상자산으로 하여 비교지수인 'MSCI | 하는 모투자신탁을 시행령 제94조제2 |
| 교. ᆸᆸ푸시키[] 푸 자정보 | Russia Index(KRW기준)' 수익률을 추 | 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투자대상자 |
| ^1 6 - (1) 투자전략 |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 다만 | 산으로 하여 비교지수인 'MSCI BRIC I |
| (1) 1 1 1 1 | 투자목적을 위해 해당지수에 편입된 | <u>ndex(KRW기준)′</u> 수익률을 추구하는 |
| | 종목별 투자비중 및 종목 수를 탄력적 |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 다만 투자목적 |
| | 으로 조절 할 수 있습니다. | 을 위해 해당지수에 편입된 종목별 투 |
| | | 자비중 및 종목 수를 탄력적으로 조절 |
| | | 할 수 있습니다. |
| | 2. 투자전략 | 2. 투자전략 |

이 투자신탁은 러시아 주식시장에 상 이 투자신탁은 브라질, 러시아, 인도, 장된 주식 및 해당 주식을 기초자산으 **중국(홍콩, 대만, 싱가포르를 포함)** 주 로 하는 DR 또는 ETF 에 주로 투자하 식시장에 상장된 주식 및 해당 주식을 여 비교지수인 'MSCI Russia Index 기초자산으로 하는 DR 또는 ETF 에 (KRW기준)' 수익률을 추종하는 것을 주로 투자하여 비교지수인 'MSCI BRI 목적으로 하는 모집합투자기구에 주로 C Index(KRW기준)' 수익률을 추종하 투자하는 자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합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집합투자기 투자기구의 운용 실적에 따라 이익 또 구에 주로 투자하는 자집합투자기구로 서 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에 따 는 손실이 발생합니다. ※ 비교지수 : [MSCI Russia Index 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. (KRW) * 90%] + [Call * 10%] ※ 비교지수 : [MSCI BRIC Index (KRW) * 90%] + [Call * 10%] [모투자신탁의 운용전략] [모투자신탁의 운용전략] (1) 기본 운용전략 (1) 기본 운용전략 ①종목선정 및 마켓타이밍을 배제한 ①종목선정 및 마켓타이밍을 배제한 채 브라질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차 브라질, 러시아, 인도, 중국(홍콩, 투자하여 일관성 있는 성과를 시현합 대만, 싱가포르를 포함) 주식시장에 상 장된 주식에 투자하여 일관성 있는 성 니다. - 이하 생략 -과를 시현합니다. - 이하 생략 -Ⅱ. 집합투자기구의 투 브라질, 러시아, 인도, 중국(홍콩, 대만, 싱가포르를 포함) 투자에 대한 내용을 자정보 업데이트 (2)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Ⅱ. 집합투자기구의 투 - 이 투자신탁은 주로 투자하는 모투 | -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 자정보 자신탁은 특정국가(러시아)의 주식 및 자신탁은 특정 국가[브라질, 러시아, ETF등에 주로 투자하여 환율 변동위험 인도, 중국(홍콩, 대만, 싱가포르 포함) (2)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에 노출되어 있는 증권(주식형) 집합]의 주식 및 ETF등에 주로 투자하고 3. 투자위험 등급 분류 투자기구로서, 채권에만 투자하는 투 환율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증권(자신탁보다 높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 주식형) 집합투자기구로서 **매우 높은** 을 의미합니다. 따라서, 글로벌 시장의 시장 변동을 감수하더라도 주가 상승 경제여건 변화와 증권의 가격변동에 이 예상되는 국가의 주식 등에 집중 대한 상관관계, 증권의 투자위험, 투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고, 글로벌 시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장의 경제여건 변화와 증권의 가격변 을 이해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. 동에 대한 상관관계, 증권의 투자위험, - 교보악사자산운용㈜는 실제 수익률 투자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 변동성(최근 결산일 기준표준편차 사실을 이해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

23.11%)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의 위 다.

험등급을 2등급(높은 위험)으로 분류|- 교보악사자산운용㈜는 **투자대상 자** 하였습니다. - 이 투자신탁이 실제 수익률의 변동 이 **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을 1등급(매우** 성(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)에 기초하여 위험 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매 결산시점 마다 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수익률의 변동성은 투자기간 동안 투 자신탁의 평균수익률 대비 수익률이

변동한 범위를 측정하는 통계량으로써

투자신탁의 위험도를 측정하는 지표의

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높은 위험)으로 분류하였습니다. 이 투 자신탁은 설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 실 제 수익률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투자 위험등급을 분류하여야 하나, 이 투자 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이 변경되 어 과거 실제 수익률 변동성이 변경되 는 모투자신탁의 수익률 변동성과 동 일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투자대상 하나입니다. 높은 변동성은 높은 위험 자산의 종류에 따라 위험등급을 분류 하였습니다.

> -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(교보악사 파워 브릭스 증권모투자신 탁(주식))이 설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 되는 경우 실제 수익률의 변동성(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주간 수익률 의 표준편차)에 기초하여 위험등급이 결정할 예정이며, 이 경우 매 결산시 점마다 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 다.

Ⅲ. 집합투자기구의 기 타 정보

이 투자신탁의 전환 청구를 한 때에는 아래에 따라 처리합니다.

삭제

2. 전환절차 및 방법

- 아래 내용 생략 -

도를 의미합니다.

